

#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(가스공급자 용)

## 1. 굴착공사 신고제도 개요

「굴착공사 신고제도」란 구멍 뚫기, 말뚝 박기, 터파기 및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하는 자가 **공사개시 전**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**공사계획을 신고**하여 가스공급자와 가스배관 매설정보를 확인 후 굴착, 가스배관 등 지하매설물 파손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민·형사상 책임으로부터 굴착자·가스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### ■ 관계법령

- ▶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(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)
- ▶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(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)
- ▶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(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)





## 2. 굴착공사 신고대상

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, **액화석유가스**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 및 **배관망** 공급사업(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)이 허가된 지역 및 **고압가스**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모든 **굴착공사(사유지 등 모든 장소·종류의 토지 굴착공사가 해당)**

### ■ 신고제외 대상

- ▶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
- ▶ 농지 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
- ▶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

## 3. 신고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

<전화>	<홈페이지>	<모바일>	<모바일앱>
			
1644-0001	www.eocs.or.kr	m.eocs.or.kr	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앱



## 4. 굴착공사 신고제도 미준수시 벌칙사항

- ◆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굴착공사 신고(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요청)를 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시가스사업법, 고압가스안전관리법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◆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임의굴착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◆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가스배관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공급을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 ◆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서 굴착계획을 통보받고 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하여 주지 않은 가스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◆ 도로법에 따라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## 5. 최근 5년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사고 현황

< 연도별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사고 현황 >

계(건)	2020년	2019년	2018년	2017년	2016년
46	11	14	6	7	8

## 6. 운영비용 부과기준

- ◆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은 매설상황 확인 대상 사업자가 부담합니다.
  - 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(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)
  - 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
  - 고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
  - 액법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
- ◆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매설상황 확인대상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관 1m당 50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.

### ■ 관계법령

- ▶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(수수료 등)
- ▶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(수수료 등)
- ▶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(수수료 등)
- ▶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0-35호「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의 부과기준」
- ▶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침 1327호(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산출지침)

## 7. 신규회원사 등록 및 운영비용 납부절차

